

#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

2019. 03. 26 일부 개정한  
공교육정상화법, 어떻게 적용할까요?



교육부

17개 시·도교육청



한국교육과정평가원

## 1.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

-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.
-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.



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.

## 2. 용어 정의

**선행교육** | 교육관련기관\*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

**선행학습** |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,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

\* 교육관련기관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



###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

구분	선행교육	선행학습
주체	교육관련기관	학습자
정의	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	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

## 선행교육의 의미



Q

'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'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
A

-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~2, 3~4, 5~6 학년군, 중·고등학교는 1~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임.
- **앞서서 편성하는 경우**란 초등학교는 학년군을, 중·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임.
- **앞서서 제공하는 경우**는 계획된(편성된)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, 학년(군)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것임.

### 3. 적용 예외

- ‘영재교육 진흥법’에 따른 영재교육기관(영재학교, 영재학급, 영재 교육원)의 영재교육
-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
- **적용 배제 교과** : 체육·예술 교과(군), 기술·가정 교과(군), 실과·제2외국어·한문·교양 교과(군), 전문 교과
- **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**  
: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. 초등학교 1~2학년에서 놀이·활동,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.



## 5. 학교의 책무

「공교육정상화법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



- 1)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
  -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.
- 2)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
  - 교과협의회, 학년협의회, 학교교육과정위원회,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
- 3)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
  - 교원, 학생,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
  - 교육과정 편성 운영, 평가 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
- 4)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
  -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



## 6. 학부모의 책무

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(수업공개의 날, 학부모 회의 등)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,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.





# 방과후학교

## 1.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



## 1.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

### 공교육정상화법

#### 제8조(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)

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,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.

## 1.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

### 공교육정상화법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 03. 26>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**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·운영되는 경우**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**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**

## 1.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

다음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

- 초등학교 1~2학년의 경우,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놀이·활동,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음.

(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4항)

- 「공교육정상화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교 휴업일 중 편성·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·산·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·고등학교에서 편성·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함.

(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)

##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



Q

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에 심화·보충 내용을 구성할 수 있나요?

A

교과 프로그램을 심화·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.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,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, **정규 수업을 대신하여 교과서 진도를 나가거나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금함.**

감사합니다

